

[별표 9] <개정 2004.4.20, 2006.5.3>

안전관리규정의 작업요령(제14조관련)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표의 우란에서 정한 사업종류에 따라 좌란에서 규정한 사항중 ○표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 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는 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점검요령·점검결과·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삭제 <1999.7.1>

카.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타.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너.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 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 업 의 종 류				
		충전	집단 공급	판매· 영업소	가스 용품	저장
1	목 적	○	○	○	○	○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3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4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5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점검요령·점검결과·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7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	○	○	○	○
9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10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	
11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12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1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14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	○	○		○
15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	○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본문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교육 · 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세부작성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